

단말기유통법 시행2년 평가 및 정책 제안

통신사·제조사에게 유리한데, 국민들만 여전히 고통
단통법·전기통신사업법 보완하여 가계통신비 대폭 낮춰야

차례

차례	2
요약	3
I.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 2년!!	4
II. 단통법 2년 평가와 정부의 통신비 관련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6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	7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이자 지구책	9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10
● 통계청 통계를 봐도, 통신비 고통이 여전함을 알 수 있어	11
● 선택약정할인제 증액하고 6개월 이하 단기 약정 신설해야	12
● 최소 데이터 제공량 늘려야	13
● 알뜰폰을 더욱 활성화해야	14
●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급	14
●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15
● 끝장 토론 제안	15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
 -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4년 1·2분기와 단말기유통법 시행한 이후인 2016년 1·2분기의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EBITDA¹는 30.4% 증가했고, ARPU는 소폭 상승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투자지출은 51.6% 감소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무려 695%나 증가했다. 2014년에 KT에서 큰 폭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퇴직금 등 지출 사항이 많았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은 틀림없다.
 - 그 결과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한 것이 허황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이자 자구책 : 분리공시제 도입해야
 -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다더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서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이다.
 -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리공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을 맞이하며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30% 수준으로 증액하고 6개월 이하 단기 약정을 신설해야 한다.
 - 알뜰폰을 더욱 활성화 하고,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는 즉시 철수해야 할 것이다.
 - 단말기유통법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이용약관심의제를 도입하여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외에도 위약금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축소하는 문제 등 역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I.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 2년!!

10월 1일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이 끼친 영향과 그동안의 통신비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가계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유리한 법'이라는 세간의 비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단말기 가격 인하나 부담 완화에도, 통신요금 대폭 인하에도 실패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강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단통법 대폭 개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래 자세한 붙임 자료에 언급하듯이, 가계 통신비 완화를 이끌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11,000원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 할인율의 폭을 30%로 확대·상향, 그리고 단통법 상의 분리공시제 도입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입법청원하고, 뜻있는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시지원금 상향 내지 상한선 폐지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통신재벌 3사가 하루빨리 통신비 인하를 시행하지 않고, 또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인하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고, 스스로도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들을 철수시키지도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득은 적은데,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5.9%), 교통비 등 공공적 부담이 50%를 육박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매우 정당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시민들과 함께 통신비 대폭 인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자료 발표에 이어 곧 이어,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합니다.

<표 1> 통계청 통계 참조, 가구당 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 천원, %)

	금 액				증 감 률		
	15.2/4	16.1/4	16.2/4	구성비	15.2/4	16.1/4	16.2/4
소 비 지 출	2,494.3	2,668.8	2,493.6	100.0	0.7	0.6	0.0
식료품·비주류음료	343.2	349.4	328.7	13.2	2.0	-0.6	-4.2
주 류·담 배	32.5	34.9	34.8	1.4	19.8	22.2	7.1
의 류·신 발	169.2	151.9	165.1	6.6	-3.4	-1.8	-2.5
주 거·수 도·광 열	278.1	323.9	272.6	10.9	7.8	-3.6	-2.0
가 정 용 품·가 사 서 비 스	109.7	101.8	104.1	4.2	2.1	7.4	-5.1
보 건	168.7	178.5	175.0	7.0	0.7	-0.3	3.7
교 통	315.1	323.3	319.5	12.8	-4.4	2.5	1.4
통 신	147.7	145.5	146.2	5.9	3.0	-0.3	-1.1
오 략 문 화	141.6	156.1	144.5	5.8	-4.4	1.3	2.1
교 육	231.3	341.7	229.6	9.2	-1.6	-0.4	-0.7
음 식·숙 박	338.2	333.2	350.2	14.0	0.3	2.2	3.6
기 타 상 품·서 비 스	219.1	228.5	223.3	9.0	3.3	1.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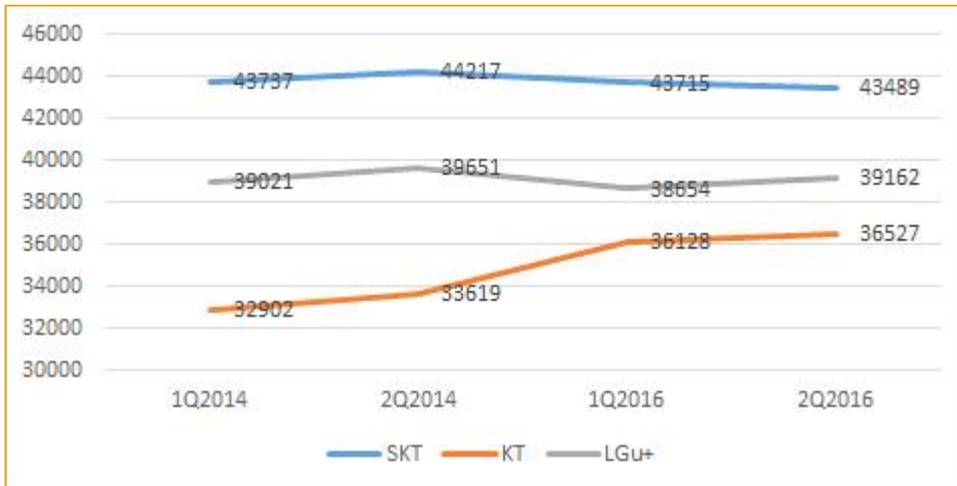
II. 단통법 2년 평가와 정부의 통신비 관련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표 2> 통신3사의 2014년 1,2분기와 2016년 1,2분기 비교

	구분	1Q2014	2Q2014	1Q2016	2Q2016	증감율
영업이익	SKT	2,524억 원	5,461억 원	4,299억 원	4,782억 원	-
	KT	1,520억 원	△8,130억 원	3,851억 원	4,270억 원	
	LGu+	1,132억 원	98억 원	1,706억 원	1,801억 원	
	소계	5,176억 원	△2,571억 원	9,856억 원	10,853억 원	
			2,605억 원		20,709억 원	
EBITDA	SKT	9,556억 원	12,635억 원	10,006억 원	10,542억 원	-
	KT	10,839억 원	1,251억 원	12,157억 원	12,572억 원	
	LGu+	4,656억 원	4,667억 원	5,736억 원	5,852억 원	
	소계	25,051억 원	18,553억 원	27,899억 원	28,966억 원	
			43,604억 원		56,865억 원	
마케팅 비용	SKT	11,000억 원	8,250억 원	7,170억 원	7,210억 원	-
	KT	7,752억 원	8,233억 원	6,555억 원	6,916억 원	
	LGu+	5,511억 원	5,497억 원	4,777억 원	5,065억 원	
	소계	24,263억 원	21,980억 원	18,502억 원	19,194억 원	
			46,243억 원		37,696억 원	
ARPU	SKT	43,737 원	44,217 원	43,715 원	43,489 원	-
	KT	32,902 원	33,619 원	36,128 원	36,527 원	
	LGu+	39,021 원	39,651 원	38,654 원	39,162 원	
투자지출	SKT	2,650억 원	5,170억 원	780억 원	2,340억 원	-
	KT	3,572억 원	5,627억 원	2,159억 원	4,213억 원	
	LGu+	5,977억 원	6,691억 원	1,999억 원	2,876억 원	
	소계	12,199억 원	17,488억 원	4,938억 원	9,429억 원	
			29,687억 원		14,367억 원	

- 출처 : SKT, KT, LGu+의 영업실적 자료

<그림 1> 통신3사의 2014년 1,2분기와 2016년 1,2분기 ARPU 비교



- 출처 : SKT, KT, LGu+의 영업실적 자료

●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사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4년 1·2분기와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한 이후인 2016년 1·2분기의 통신사 실적을 비교한 <표 2>을 보면, EBITDA²는 30.4% 증가했고, ARPU는 소폭 상승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이는 가입자가 5,80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통신3사가 수익을 늘리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고히 구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투자지출은 51.6% 감소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무려 695%나 증가했다. 2014년에 KT에서 큰 폭의 정리해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퇴직금 등 지출 사항이 많았음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은 틀림없다. (KT를 제외한 SKT와 LGu+의 2016년 1·2분기 영업이익은 2014년 1·2분기 영업이익에 비하여 36.6% 증가했다)

세간에는 단말기유통법을 두고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ARPU는 소폭 증가했고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18.5%나 줄일 수 있어서 그 금액만큼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투자지출금액(CAPEX)은 51.6%나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통신사가 신규투자를 위해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절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통신3사는 2015년 3조 59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 9237억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으로 보조금(지원금) 지출을 대폭 줄인 통신사들만 큰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SKT를 필두로 한 통신3사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통신3사가 2014.10.부터 2015.6.까지 9개월 동안 판매대리점에 리베이트로 2조원 넘게, 1인당

2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15만원 꼴로 지급³ 했다는 것까지 감안해본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넘쳐난다는 추가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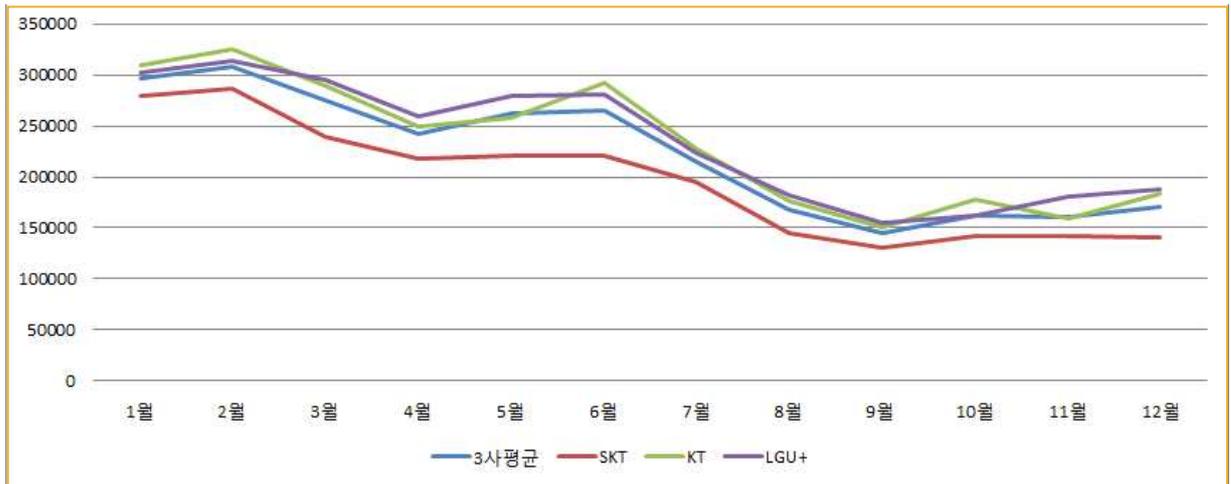
현재까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3사는 지원금을 약 2조 원 정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⁴. 단통법 국면이, 통신사가 국민들에게 절실한 공시지원금을 축소한 대신 통신사의 이익만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다.

<그림 2> 이동전화 단말기 평균 지원금 변화



- 출처 : 2016.09.01. 한겨레신문

<그림 3> 2015년 이동전화 단말기 이통사별 월평균 지원금



- 통계 출처 : 방통위, 그래프 : 최명길 의원실 재구성

3 2015.09.22.<국민 '호갱' 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4 2016.09.01. <이통3사, 단통법 이후 지원금 약 2조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

- 중저가 단말기 확대는 소비자들의 저항의 결과이자 지구책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 상향 절실,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시행되어야

정부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말기가 확산됐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중저가 단말기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통신소비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공시지원금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가 단말기 거품에 저항한 결과라는 측면이 더 클 것이다.

<표 3> 단말기별 SKT의 공시지원금액

모델	출고가(A)	공시지원금(B)	판매가(A-B)
삼성 갤럭시S7엣지 32G	924,000	260,000	664,000
삼성 갤럭시 노트7 64G	988,900	248,000	740,900
LG G5	863,000	277,000	559,000
애플 아이폰6S 64G	999,900	122,000	877,900
애플 아이폰6S+ 64G	1,130,800	122,000	1,008,800
팬택 SKY IM-100	449,900	300,000	149,900

- 출처:SKT홈페이지(2016.09.27.)

- T시그니처 Master 요금제(부가세포함 110,000원)를 선택했을 때를 기준

위 <표 3>은 소비자 선호가 높은 단말기별로, SKT에서 최고가 요금제인 T시그니처 Master 요금제(부가세포함 요금 월 110,000원)를 선택 했을 때의 공시지원금액 및 판매가액을 표시한 것이다. 현재 공시지원금액을 보면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다라도 상한액인 33만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해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갤럭시 노트7이 출시되었을 때, 통신3사 모두가 매우 작은 지원금만 책정해 다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가 매우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큰 형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항과 지구책의 일환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술하고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단말기 가격 거품이 획기적으로 제거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비현실적인 지원금 상한선이 더욱 상향되고, 또 상향된 지원금 상한선 금액까지 제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와 관행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래 단말기유통법에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리공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단말기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인 분리공시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통법에는 단말기 가격 인하내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유도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저가 단말기 구입이라는 소비자들의 불가피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이 확산된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법률상의 제도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 : 기본료 즉시 폐지해야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2013년, 42,565원에 비하여 2016년 1~3월 39,142원으로 약 3천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는 “가계 총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비중이 OECD 1·2위 국가 수준(2013년 7월)”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있는 1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또 더 이상 걷을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하면,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5,8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점까지 살펴본다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적자 상태의 영세한 알뜰폰(알뜰통신) 회사들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있는데, 거대 재벌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재벌 통신3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와 탐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9월 26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서 발행한 보도자료⁵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기준」 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두고 있고, 8년이 지난 이후에는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통신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로 인하여 통신3사가 취한 부당이익은 적어도 5조 2,84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감가상각과 통신설비 설치 비용은 기본료를 징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세정 의원실이 추산한 금액은 기본료 중에서 통신망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큼 통신3사의 부당이익금을 추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것과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것은 2010년 전후에 발행된 이동통신요금제 관련 다수의 논문에서 정액요금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와 감가상각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설정된 것이다. 통신3사들도 기본료 폐지에 반대 논거로서 7조 원이 매출 삭감되어 적자로 돌아선다고 언급한바 있는데, 이 기본료 총액 7조 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계산해야 나오는 금액이다. 또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며 신규 설비 투자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감가상각을 통한 기존 설비 설치비용 회수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통신3사와 KTOA의 기본료 폐지의 반대 논거는 이제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통신사는 이제 목적을 잃어버린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5 2016.09.26.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2,842억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16.09.2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2dbSvCW> 참조)

● 통계청 통계를 봐도, 통신비 고통이 여전함을 알 수 있어

2016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의 전체 지출 중 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14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15만원에 가까워 큰 부담인 것을 알 수 있고, 가구원 수가 많으면 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 통신비가 소폭 감소한 것은 단통법 상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과 중저가 폰의 활성화, 데이터전용금제의 출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계 지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구책'으로 통신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바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15만원 안팎의 통신비 지출은 각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 거듭 강조하지만 반드시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 정액요금제의 전체적인 하향, 선택약정할인제도 상의 할인율 상향(현행 20%→30%),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4>을 보면 통신장비 구입비용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펼쳐야 할 것이다.

<표 4> 이동통신기기 구입 감소로 통신장비 지출이 4.6% 감소하였고, 일반전화요금 등 통신서비스도 0.4% 감소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단위 : 천원, %)

	2015.2/4			2016.1/4		2016.2/4			
	금액	구성비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실질
통신	147.7	100.0	3.0	145.5	-0.3	146.2	100.0	-1.1	-1.1
· 통신 장비	22.7	15.4	29.3	19.6	-5.6	21.7	14.8	-4.6	-4.4
· 통신 서비스	124.8	84.4	-0.7	125.6	0.6	124.2	85.0	-0.4	-0.5

-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을 증액하고 6개월 이하 단기 약정 신설해야

<표 5> 해외 주요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 및 할인율 비교

구 분	할인금액		할인율	
	구간	평균	구간	평균
일본 NTT DoCoMo	1,680엔	1,680엔(12,564.9원)	11.0% ~ 48.2%	27.0%
독일 T-Mobile	€10.00	€10.00(10,207.3원)	10.0% ~ 66.9%	28.7%
호주 Telstra	\$10 ~ \$30	\$20.00(10,702.1원)	16.7% ~ 25.0%	21.2%
미국 T-Mobile	\$5 ~ \$20	\$16.82(13,722.5원)	12.5% ~ 28.6%	20.7%
프랑스 Orange	11€ ~ 26€	16.63€(15,718.0원)	27.1% ~ 37.6%	33.3%
평 균	-	(12,583원)	-	26.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 평가한 원화

2) 일본은 무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2년 약정할인(50%)고려시 할인액은 800엔 (6,282.4원)으로 감소

3) 프랑스는 12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비교, 그 외는 24개월 약정 기준

출처 : 2013.6. 190512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선택약정할인제) 요금인하율이 1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월 15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⁶ 에서 해외 주요국의 선택약정할인제 할인율이 평균 26.2%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효성 있는 선택약정할인제가 되려면 요금 할인율이 30%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표 5 참조> 그 후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기존 선택약정할인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 할인으로 상향 조치했다. 그 결과 누적 1천만 명의 통신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했고, 이는 단말법의 최대 성과로도 꼽히고 있다.

현행 선택약정 할인제 요금할인율을 20%에서 당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30%로 상향 조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 선택약정할인제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정이 끝난 단말기 또는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고 단말기 공기계를 구매한 후 통신사 계약을 맺은 경우(자급제)와, 통신사 계약과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의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통신사 절대 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표 2>과 <그림 1>을 보듯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4년 1·2분기와 시행 이후인 2016년 1·2분기의 ARPU를 비교해보면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 1분기 SKT와 KT, LGU+의 ARPU는 각각 43737원, 39021원, 32902원이었으나, 2016년 2분기 ARPU는 43489

6 2015.01.15.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T37tqo>

원, 39162원, 36527원으로 전체적으로 약간씩 상승했다.

통신3사는 20%씩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요금할인제에 대하여 매출하락 부담이 크다면 30%로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선택요금할인제 누적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단말기유통법 이전의 상황에 비하여 오히려 ARPU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하락 우려는 근거 없다.

2015년 4월 선택요금할인 폭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조치 하면서 미래부는 보도 첨부 자료로 Q&A 자료를 발표했다. [Q9]에서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향후 이동사가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 모순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래부는 “만약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가능성이 나타나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음”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림 2>에서 언급했듯이 통신3사는 지원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통신3사가 마치 단합을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조사하고 2015년 4월에 공언했듯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폭의 결정은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 등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듯이 통신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약정 할인의 폭을 결정하는 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통신원가 대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대폭 할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통신사 이익 확대, 마케팅비용 축소, 선택약정 20%할인 이후에도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ARPU를 고려해 볼 때, 현재의 20% 할인에서 30%로 상향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미래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 미래부는 2015년 4월 보도자료에서 [Q3]으로 “현재 1년 또는 2년 약정에 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정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에 “추가적으로 6개월 이하의 약정 신설 여부는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여 검토 하겠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는 1년 또는 2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기간만 약정할 수 있다. 24개월 약정 만료 이후에 20%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노후화 때문에 1년 약정 유지가 부담스럽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신설하거나, 약정기간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 최소 데이터 제공량 늘려야

현재 SKT의 band데이터 세이브 요금제(부가세 포함 요금 월 32,890원)는 데이터를 300MB를 제공한다. 그러나 올해 7월 기준 LTE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평균 5.11GB(5235MB)를 사용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제공량 때문에 부득이 높은 비용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문자의 사용량 증가는 정체된 반면에 데이터 사용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낮은 요금제에서도 만족스럽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량을 상향 조치해야 할 것이다.

- 알뜰폰을 더욱 활성화하고,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는 즉시 철수해야
또한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인하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고, 스스로도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들을 철수시키지도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2012년 말 127만명 수준의 알뜰폰 가입자 숫자가 매년 증가해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53만명에 달함), 국민들이 그 만큼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알뜰폰을 찾고 있는 것이다.

원래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er) 시장에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한 그 취지상 통신재벌 3사(MNO: Mobile Network Operator)가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미래부)는 SKT의 자회사인 SK텔레콤의 진입을 허용해준 것을 시작으로 결과적으로는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 모두가 알뜰폰에 진출하게 해주었다. 이는 알뜰폰 시장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과 시장 정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알뜰폰 시장에 부당하게 진출해있는 통신재벌 3사는 신속히 알뜰폰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다. 또 통신재벌 3사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망 도매가를 더욱 저렴하게 판매해서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더욱 더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전과사용료를 영구히 면제해. 알뜰폰 시장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정부 입장은 2017년 9월까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과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 이미 MNO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전과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전과사용료를 영구히 면제하거나 최소한 상당기간(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는) 면제 조치를 연장해야 할 것이다.

-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의 9월 26일자 보도자료⁷에 의하면 “단통법 시행후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약 80%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시정하고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차별은 공시지원금 축소로 변질됐고, 단말기 출고가를 유도

7 2016.09.26. <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인 분리공시제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통신 요금제 인하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며, 통신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수준의 통신요금이 책정되었는지 “통신 이용약관 심의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곧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다.

또 알뜰폰 시장에 부당하게 진출해있는 통신재벌 3사가 곧 알뜰폰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또 통신재벌 3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망 도매가를 더욱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안도 곧 입법 청원하고 의원 발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이외에도 약정기간 미준수시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까지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제조사가 지원한 지원금은 위약금 산정 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통신3사의 멤버쉽포인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멤버쉽포인트를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게 해주거나 1회 사용 한도를 폐지하거나 그 상한을 대폭 상향해 멤버쉽포인트 사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멤버쉽포인트를 축소하는 문제 등도 역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곧 국회에 제출된 단통법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에 대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미래부·방통위, 그리고 통신재벌 3사와 공개토론·끝장토론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끝.

참여연대 정책자료

단말기유통법 시행2년 평가 및 정책 제언

발행일 2016. 09. 30.

발행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담 당 심현덕 간사 02-723-5303 min@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